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인터넷 청약안내

청약 신청일자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0.06.29 (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청약 건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건본주택(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11)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광명시 2년이상 거주자)	2020.06.30 (화) 08: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1순위 기타지역 (광명시 2년미만 및 수도권거주자)	2020.07.01 (수) 08:00~17:30		
	2순위	2020.07.02 (목) 08:00~17:30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건본주택 방문접수를 통해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시 이내에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1순위 청약자격 요건 확인

- ① 만 19세 이상 광명시 및 수도권 거주 세대주 (단, 해당지역 청약 미달 시 기타지역 청약 가능)
- ②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 이상
- ③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거나, 1주택 소유자 (청약은 세대주만 가능)
- ④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⑤ 광명시 2년이상(2018.06.19 부터) 계속 거주 시 해당지역 1순위 청약 가능

광명시는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됩니다.

지역별 청약 예치금

구분	경기도(광명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안내

주택형별 대상 세대

구분		49A	49B	59	59TA	59TB	74	74TA	84	84TA	84TB
장애인	경기도청	-	-	-	-	1	1	1	2	1	2
	서울시청	-	-	-	-	-	1	1	2	1	2
	인천시청	-	-	-	-	-	1	1	2	1	2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	-	-	-	-	-	-	1	1	1
	장기복무제대군인 외	-	-	-	-	-	-	-	1	-	2
중소기업근로자		-	-	1	-	1	-	-	-	-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1	1	-	-	-	-	-
위안부		-	-	-	-	-	-	-	-	-	1
북한이탈주민		-	-	1	-	-	-	-	-	-	1
의사상자		1	-	-	-	1	-	-	-	-	-

신청대상 및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국가유공자), 3호(국가보훈대상자), 4호(5.18민주유공자), 5호(특수임무유공자), 6호(참전유공자), 8호에 의거 제35조1항제6호(장기복무제대군인), 7호(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8호(의사상자), 9호(북한이탈주민), 15호(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7호(장애인), 23호(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무주택세대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함. 자격요건: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총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단,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의사상자: 경기도청 복지사업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장애인: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타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하는 경우에는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감정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안내

주택형별 대상 세대

구분		49A	49B	59	59TA	59TB	74	74TA	84	84TA	84TB
소득기준	우선공급(75%)	-	-	2	2	5	4	6	14	8	20
	일반공급(25%)	-	-	1	-	1	1	2	4	2	7

신청대상 및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7년 이내(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자녀수 선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선정함.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25% 선정 시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② 제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③ 제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광명시 2년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광명시 2년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초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30% 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130% 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인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원) * (N-8)} (N→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어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근로자	신규취업자/ 금년도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건강보험 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①,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①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세무서,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근로자 / 일용직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2019.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전년도1월1일부터 모집공고전까지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서류 제출 및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소득 (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등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견본주택 비치	

※ 직인날인이 누락되었거나, 사본(팩스, 복사, 인쇄본 등)인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이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안내

주택형별 대상 세대

구분		49A	49B	59	59TA	59TB	74	74TA	84	84TA	84TB
지역기준	경기도 거주자(50%)	-	-	-	-	-	1	2	4	3	8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	-	-	-	1	2	4	3	8

신청대상 및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택공급 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또한,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처리 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전혼자녀의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제 2018-269호, 2018.05.08.」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해당주택건설지역인 광명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 대상 세대수의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서울시 및 인천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단, 경기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건설지역(광명시 2년 이상) 우선거주자가 우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거주지역에 따라 “배점기준표”의 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함(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하여 입주자 선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배점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시·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등본상 등재)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안내

주택형별 대상 세대

구분	49A	49B	59	59TA	59TB	74	74TA	84	84TA	84TB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광명시 2년 이상 거주자 우선 공급	-	-	-	-	1	1	1	3	1	4

신청대상 및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청약자격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청약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광명시 2년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 가점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일반공급(1·2순위) 청약안내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1순위(해당 지역)	2020.06.30(화) (08:00~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모바일앱
1순위(기타 지역)	2020.07.01(수) (08:00~17:30)		
2순위	2020.07.02(목) (08:00~17:30)		

신청대상

신청자격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 (2순위로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보며 본 주택의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충족 시 해당 충족순위에 청약 가능 ※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 바람.

순위별 요건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1순위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100% / 추첨제 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부양가족 산정시에서는 제외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해당지역] 광명시 2년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광명시 2년미만, 경기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인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상기 안내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청약 가점제 유의사항

1순위 청약 가점제 신청시 유의사항 (필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양가족 체크시 본인은 제외하시길 바랍니다.(기본점수에 반영됨) 2.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30세 이전에 혼인시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합니다. 3.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주소에 등재된 직계존속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예 : 장인, 장모의 주택도 포함,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지만, 부양가족수에는 제외하여야 함) ※ 2018.12.11 이후 분양권은 산정기준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주자모집공고상의 "무주택 판단기준"을 반드시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 상기사항은 부적격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청약당첨 후 계약을 하여도 계약취소사유가 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가점항목	적용기준	이것만은 꼭!
무주택 기간 총점 3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무주택기간 산정 대상자 ·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신청 연령 기준 만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만 나이"기준으로 선정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단,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이후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만 30세 미만으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p 무주택기간산정은 한국식 나이가 아니라 "만"나이에 계산해야 됩니다. ▶ 실수 사례 예)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0.06.19(금) 기준 1990년 06월 19일 생의 경우 • 입력내용 : 한국식 나이로는 31세로 무주택기간을 "1년 이상(4점)"으로 입력(X) • 실제점수 : 실제 나이는 만 30세 무주택기간을 "1년 미만(2점)"으로 입력(O)
부양 가족수 총점 3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세대주(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시 그 배우자도 세대주 이어야함)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만 세대주이면 가능 ■ 만 30세 이상인 미혼자녀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 부양가족 산정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은 청약자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에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경우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부양가족의 인정 범위</p> <p style="font-size: small;">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무주택일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무주택일 경우)</p> <p style="font-size: small;">형제자매 동거인X 본인(세대주) 배우자 형제자매 동거인X</p> <p style="font-size: small;">만 30세 미만 미혼자녀인 경우 자녀 자녀(기혼)X 자녀의 배우자X</p> <p style="font-size: small;">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손자 손녀</p> <p style="font-size: small;">손자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미혼인 경우 (단, 청약자 동일등본상에 등재된 경우)</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p 부양가족산정시 "청약자 본인은 제외"입니다. ▶ 실수 사례 예) A씨의 사례 • 입력내용 : 단독세대주인데 본인을 부양가족수로 계산하여 "1명" (10점)으로 입력(X) • 실제점수 : 부양가족수는 "0명" (5점)으로 입력(O) ▶ 유의사항 - 부양가족수는 본인은 제외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며,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만60세 이상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청약통장 가입기간 총점 17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실제 인터넷 청약시에는 청약통장 가점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함. 	

※ 상기 안내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